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2. 의안번호 : 제1180호 및 제1181호
3. 제출일자 : 2016. 5. 10.
4. 회부일자 : 2016. 5. 13.

II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결산개요

1. 특별회계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854,807	52,727	907,534	1,038,621	1,038,621	-	-	-	114.4	100.0

- 예산현액은 9,075억 34백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859억원, 매출공채 6,20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389억 5천만원 등이 있음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310억 87백만원이 많은 1조 386억 2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14.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수납률(예산현액 대비 101.1%, 징수결정액 대비 100.0%)에 비해 증가함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705,849	52,727	-	-	758,576	695,446	50,927	12,203 (1.6)

- 예산현액은 7,585억 7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954억 4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22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3%에 비해 감소하였음

【예산의 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은 1건에 7억 8천만원으로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사업 감리비 부족예산으로 1건 : 7억8천만원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이월사업비(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2건과 사고이월 5건이 있으며, 명시이월 12건은 485억 6천 4백만원, 사고이월은 5건에 23억 6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현액 대비 6.7%로 전년도 이월률 8.0%와 비교할 때 감소하였음

※ 주요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130억 34백만원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 54억 82백만원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 175억 50백만원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 93억 50백만원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 31억 48백만원

※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6억 39백만원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 2억 24백만원
- 9호선 전동차 38량구매 및 개화차량기지유치선 증설 : 15억원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22억 3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6%로 전년도 불용률 3.0%와 비교할 때 감소하였음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758,576	12,203	1.6	2014년 불용률 3.0%

○ 발생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 5억원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 71억 89백만원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11백만원
-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건설 : 29억 45백만원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 6천만원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 1억 1천만원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 3백만원
-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 4억 1백만원
- 인력운영비(도시철도) : 6억 48백만원
- 예비비 : 3억 36백만원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1건에 8억 91천만원으로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배상금 등 1건 : 8억 91천만원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6,147	18,199	-	-	24,346	18,088	6,075	183 (0.8)

- 예산현액은 243억 4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0억 8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억 8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이체】

- 해당사항 없음

【이월사업비(명시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만 있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60억 7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현액 대비 25%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교통개선부담금) : 60억원 75백만원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억 83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8%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24,346	183	0.8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15,006	-	15,006	15,006	15,006	-	-	-	100	100.0

- 예산현액은 150억 6백만원이고, 150억 6백만원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임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150억 6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 용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1,000	4,538	-	-	25,538	9,266	12,773	3,499 (13.7)

- 예산현액은 255억 3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2억 6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34억 9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예산의 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이월사업비(명시 · 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으며, 명시이월은 5건에 112억 94백만원과 사고이월은 1건에 14억 7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현액 대비 50%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 42억 94백만원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 70억원

※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 14억 79백만원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4억 99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3.7%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비고
25,538	3,499	13.7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IV. 검토의견

1. 세입·세출결산 개요

가. 서울시 전체 총괄

1)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C/A)	(C/B)
합 계	27,112,104	30,383,753	28,715,600	143,041	1,525,112	105.9	94.5
일반회계	19,213,944	22,029,586	20,482,828	139,164	1,407,594	106.6	93.0
특별회계	7,898,160	8,354,167	8,232,772	3,877	117,518	104.2	98.5

- 2015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예산현액 27조 1,121억 4백 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조 7,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9%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96.8%)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비율(100.3%) 대비 1.1%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로 최근 5년간 평균 비율(94.3%)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비율 (93.8%) 대비 0.2% 증가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C)	비 율 (C/A)
합 계	27,112,104	25,895,664	25,521,635	781,763	2.9	808,706	3.0
일반회계	19,213,944	18,620,888	18,448,024	314,923	1.6	450,997	2.3
특별회계	7,898,160	7,274,776	7,073,611	466,840	5.9	357,709	4.5

-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조 2,139억 44백만원과 특별회계 7조 8,981억 6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조 1,121억 0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25조 5,216억 35백만원(94.1%)을 지출하고, 7,817억 63백만원(2.9%)을 이월하였으며, 8,087억 6백만원(3.0%)을 불용하였음

나.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총괄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로 총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조 536억 27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228억원임.

1) 세입결산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의 2015년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은 1조 536억 27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9,225억 40백만원) 대비 114.2%임

- 징수결정액 1조 536억 27백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음

〈2015년도 세입예산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 비율 (D/B)
합 계	922,540	1,053,627	1,053,627	-	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07,534	1,038,621	1,038,621	-	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006	15,006	15,006	-	0.0

2) 세출결산

-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서 총 8,084억 6천만원으로 이중 7,228억원이 지출(89.4%)되고, 697억 75백만원이 이월(8.6%)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8억 85백만원(2.0%)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의 도시철도 건설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7,585억 76백만원임
 이중 지출액은 6,954억 46백만원(91.7%), 이월액은 509억 27백만원(6.7%), 집행잔액은 122억 3백만원(1.6%)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 252억 89백만원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2,168억 91백만원
-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건설 : 42억 49백만원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 714억 77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현액은 243억 46백만원임

이중 지출액은 180억 88백만원(74.3%), 이월액은 60억원 75백만원(25.0%)이고, 집행잔액은 1억 83백만원(0.7%)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하남선(5호선 연장)광역철도 건설 : 180억 88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하남선(5호선연장) 및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이며, 예산현액은 255억 38백만원임

이중 지출액은 92억 66백만원(36.3%), 이월액은 127억 73백만원(50.0%)이며, 집행잔액은 34억 99백만원(13.7%)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하남선(5호선 연장)광역철도 건설 : 77억 45백만원
- 별내선(8호선 연장)광역철도 건설 : 15억 21백만원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808,460	722,800	69,775	15,885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758,576	695,446	50,927	12,203
교통사업 특별회계	24,346	18,088	6,075	18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5,538	9,266	12,773	3,499

2. 주요사안별 의견

가. 세입관련 사항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075억 3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36억 42백만원, 국고보조금 859억원, 도시철도운영 지방채 6,200억원, 보전수입 등 기타회계 전입금 1,979억 92백만원임
- 2015년 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1조 386억 20백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최근 3년간의 미수납액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전액 수납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과오납환액	수납액	당해연도 미수납액(B)	결손처분	미수납액 비율(B/A)
2013	1,241,879	-	1,241,879	-	-	-
2014	1,134,204	33,383	1,134,204	-	-	-
2015	1,038,620	-	1,038,620	-	-	-

□ 광역교통특별회계

-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0억 6백만원으로 전액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임

- 2015년 결산결과 150억 6백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음

〈광역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 3년간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과오납 반환액	수납액	당해연도 미수납액(B)	결손처분	미수납액 비율 (B/A)
2013	-	-	-	-	-	-
2014	-	-	-	-	-	-
2015	15,006	-	15,006	-	-	-

나. 세출관련 사항

1)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이월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509억 27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0억 75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27억 7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97억 7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7,585억 76백만원 대비 6.7%인 509억 27백만원이 이월됨
- 이월액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증가했으며, 2015년은 조금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이월규모 보이고 있는 바,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되도록 사업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이월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2013	519,698	36,462	7.0
2014	658,123	52,727	8.0
2015	758,576	50,927	6.7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역을 거쳐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까지 총연장 9.18km에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2,305억 76백만원 중 136억 73백만원(5.9%)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이월률(5.9%)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정 지연으로 인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이월액이 각각 45억 66백만원(57.5%), 68백만원(24.0%)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였으나 2018년까지 약 3년 이상 공사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 내역
합 계		230,576	13,673	5.9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22,356	9,039	4.0	· 명시이월(9,039)
	감리비	7,937	4,566	57.5	· 명시이월(3,995) · 사고이월(571)
	시설부대비	283	68	24.0	· 사고이월(68)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연장 11.4km에 정거장 13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890억 86백만원 중 175억 49백만원(19.6%)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당초 '09.9.15일부터 '14.9.14일까지 5년간이었으나, 매년 공기가 지연되어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추가 발생이 현실화되자 사업시행자가 분쟁을 제기¹⁾하여 기획재정부의 분쟁조정까지 받았으나 조정결과²⁾를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³⁾, 결국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와 공사기간을 '16.11.30일까지 26.5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⁴⁾한 바 있음

1) 기획재정부 분쟁조정 신청 : 2013.12.2

2) 분쟁조정 결과 통보 : 2014.5.7

- 공기는 26.5개월 연장(2014.9.14 ⇒ 2016.11.30), 2015.10.23.부터 준공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연장기간의 추가비용(간접비)은 50:50 분담
- 구체적 규모는 준공시 당사자 합의 결정, 사업시행조건에 반영

3) 분쟁조정 결과 의견제출 : 2014.5.21

- 서울시 : 분쟁처리 합의서 취지에 따라 “수용”
- 사업자 :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측 귀책을 50% 인정한 것이므로 “불수용”

결국 공정 지연으로 건설보조금 지급 순연과 전면책임감리
 용역 감리원 투입 조정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시설
 비 167억 24백만원, 감리비 8억 26백만원이 명시이월됨
 동 사업은 향후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추가 사업비 발
 생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사 기간이 연
 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명시이월 내역
합 계		89,087	17,550	19.6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4,719	16,724	19.7	건설보조금 등(16,724)
	감리비	4,218	826	19.5	1공구(34), 2공구(123), 3공구(215), 4공구(158), 궤도(126), 시스템(170)
	시설부대비	150	0	0.0	-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여의도(셋강역)에서 서울대 앞까지 총연장 8.06km, 정거장 11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95억원 중 93억 50백만원(98.2%)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당초 2014년에 민자협상을 완료하고 '15.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15.8월에 실시계획서 작성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토목공사 등을 시

4) 합의서 체결 : 2014.9.12

행함으로써 사업비를 지출할 것으로 계획⁵⁾했으나 실제 실시협약이 '15.8월에 체결⁶⁾되어 전체 공사기간 및 사업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투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됨
 동 사업은 향후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추가 소요된 기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명시이월 내역
합 계		9,500	9,350	98.4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420	8,420	100.0	민자사업 실시협약이 '15.8월에 체결되어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투입시기 조정으로 이월
	감리비	980	870	88.8	
	시설부대비	100	61	61.0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에서 노원구 상계역간 총 13.34km의 경전철을 설치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및 분당선 등과 연계 교통망을 형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31억 67백만원 중 31억 48백만원(99.4%)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당초 주간사인 경남기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15.4월 경남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5) 2015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37

6)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15.8.12., 서울특별시,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결정됨에 따라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15.11.16)을 확인한 결과 동북선 사업 미반영, 재무능력 미충족, 안정적인 사업추진 의지 불투명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주 간사 현대엔지니어링)와 협상을 추진⁷⁾함에 따라 이월하게 됨

동 사업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공사가 착수되어 이월된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명시이월 내역
합 계		3,167	3,148	99.4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746	2,736	99.6	우선협상대상자 주간사인 경남기업의 회생절차개시로 사업추진 지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따른 사업 지연
	감리비	321	321	100.0	
	시설부대비	100	92	92.0	

7)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도시철도계획부-10193(2015.11.27.)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중 이월액 3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30,576	13,673	5.9	궤도 및 시스템공사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정지연에 따른 감리투입 조정으로 감리비 미집행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2,900	5,705	44.2	설계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차량기지 유치선증설	20,580	1,500	7.2	궤도, 신호, 전차선 공사비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완료후 '15.12월 바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89,087	17,550	19.7	공정지연에 따른 건설보조금 지급 순 및 차수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9,500	9,350	98.4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투입시기 조정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3,167	3,148	99.4	우선협상대상자의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개시됨에 따라 협상 및 사업추진 지연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243억원 46백만원 대비 25.0%인 60억 75백만원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255억 38백만원 대비 50.3%인 127억 73백만원이 각각 이월됨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사업은 수도권 남동부개발(강일지구, 미사지구, 풍상지구 등)에 따라 서울시~하남시 간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15년 예산현액 243억 46백만원 중 60억 75백만원(25.0%)을 명시이월 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2015년 예산현액 155억 38백만원 중 42억 94백만원(27.6%)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14.3월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협약이 체결⁸⁾되어 서울시 시행구간이 서울시계내로 확정되었고, '15.3.30일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구간 지장물 이설 및 관련 기관 인·허가 협의절차 등을 진행하여 '15.8월에야 본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공정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명시이월함

동 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공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서울시는 향후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서울시와 수도권 남동부권역 간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비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합 계	24,346	6,075	25.0	
	시설비	22,130	4,495	20.3	
	감리비	2,188	1,580	72.2	
	시설부대비	29	-	-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합 계	15,538	4,294	27.6	
	시설비	15,538	3,993	25.7	
	감리비	438	296	67.6	
	시설부대비	18	5	27.8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개발(별내지구, 진건지구, 지금지구, 갈매지구 등)에 따라 서울시~구리시 간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

8) 2014. 3.18 :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 협약 체결(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2015년 예산현액 100억원 중 84억 78백만원(84.7%)을 명시이월(70억원) 및 사고이월(14억 78백만원)하였음

동 사업은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 추진계획’⁹⁾ 수립 및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사전절차(타당성심사¹⁰⁾·계약심사¹¹⁾·기술심사¹²⁾ 등)을 거쳐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¹³⁾¹⁴⁾¹⁵⁾이 수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동 사업은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LH공사 등과 ‘8호선 연장(별내선) 건설협약’¹⁶⁾을 체결할 당시부터 협의지연에 따른 공정이 소요되었으므로, 서울시는 향후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9)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 추진계획, 교통정책과-12360(2015.6.17.)(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0호)

10) 제722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통보(별내선 기본 및 실시), 기술심사담당관-10580(2015.6.15.)

11) 2015년도 제6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재무과-31586(2015.6.22.)

12) 제95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11334(2015.6.29.)

13)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 도시철도계획부-5494(2015.6.29.)

14) 용역계약체결 통보(별내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재무과-46790(2015.9.22.)

- 계약명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계약자 : 수성엔지니어링 등 11개사

- 계약기간 : 2015.9.17.~2017.1.8

15) 용역계약체결 통보(별내선 8호선연장 건설사업관리), 재무과-67297(2015.12.29.)

- 계약명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 계약자 :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 계약기간 : 2016.1.4.~2017.1.2

16)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송부, 경기도 철도건설과-5823(2015.6.25.)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명시·사고이월 내역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합 계	10,000	8,478	84.7	현재 설계중('15.9~'16.12)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시설비	9,974	8,452	84.7	· 명시이월(6,974) · 사고이월(1,478)
	감리비	26	26	100.0	· 명시이월(26)

2)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불용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22억 3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83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34억 9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58억 8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7,586억 76백만원 대비 1.6%인 122억 3백만원이 불용됨
- 동 회계내의 불용률은 낮은 수준이나 각 사업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막대하여 불용액 규모가 크므로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불용액 3년간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불용액 (B)	불용률 (B/A)
2013	519,698	13,399	2.6
2014	658,123	19,870	3.0
2015	758,576	12,203	1.6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은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향상 및 도시교통 혼잡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324억 77백만원 중 71억 89백만원(22.1%)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915공구(차병원사거리~차관아파트) 계약당사자인 경남기업(주)과 대원건설산업(주) 등의 계약해지 요구¹⁷⁾¹⁸⁾ 및 917공구(ASEM타워~종합운동장역) 환승통로 동선 변경에 따른 물량조정¹⁹⁾ 등으로 공사비가 감액되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임

917공구의 경우 환승통로 동선변경에 의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은 인정되나, 당초 환승통로 동선설계가 미흡함으로써 변

17)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공사계약해지 통보, 경토목 제15-143호(2015.5.27.)

18)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공사계약해지 통보, 대원토목 제15-23호(2015.5.29.)

19) 「지하철9호선 917공구」 계약금액조정 및 차수공사 물량조정 검토보고(총괄,9,10차), 도시철도토목부-12990(2014.11.28.)

경설계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내역	
합 계	32,477	7,189	22.1	지하철915공구 경남기업(주)의 계약해지(30억 99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1,606	7,187	22.7	지하철917공구 환승통로 동선변경 등 물량 조정(24억 4백만원)
	감리비	857	1	0.1	시운전 등 시스템분야 집행잔액(16억 81백만원)
	시설부대비	15	1	6.7	폐기물 정산(3백만원) 시설부대비(1백만원)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사업²⁰⁾은 진접선(4호선 연장)건설 사업 중 우리시 사업대상인 차량기지 신설(254,666㎡), 인입선 설치(3.07km) 및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129억원 중 29억 45백만원(22.8%)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설계비로 128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신청시 123억 38백만원, 심사 결과 122억 17억원²¹⁾, 용역계약 결과 93억 16억원²²⁾으로 각각 4.0%, 1.0%, 27.5%가 감액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것으로, 당초 적정 용역비 산정 미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

20) 진접선(4호선 연장) 추진계획 : 위치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규모 -총연장 14.796km, 정거장 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비 - 1조 3,322억원

21) 제76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진접선 차량기지 이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사담당관-1411(2015.1.26.)

22) 용역계약체결 통보(진접선 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재무과-23938(2015.5.8.)

는 바, 향후에는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사업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내역
합 계		12,900	2,945	22.8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850	2,945	22.9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시설부대비	50	-	-	-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중 불용액 3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1,391	500	35.9	집행사유 미발생(시부담은 수협전에서 전액 부담) 시설비(500)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32,477	7,189	22.1	지하철915공구 계약상대자인 경남기업(주)의 계약해지 요구로 인한 집행잔액(3,099백만원), 지하철917공구 환승통로 동선변경 등에 따른 물량조정(2,404백만원), 시운전 등 시스템분야 집행잔액(1,681백만원), 폐기물 실물량 정산(3백만원), 시설부대비(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12,900	2,945	22.8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시설비(2,945)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410	401	97.8	민자사업 추진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사무관리비(401)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0,634	451	4.2	보수(386), 직급보조비(21), 성과상여금(44) 등

□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243억 46백만원 대비 0.7%인 1억 83백만원이 불용됨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24,347	183	0.8	감리투입계획조정 등 집행잔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255억 38백만원 대비 13.7%인 34억 99백만원이 불용됨

〈201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불용액 3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15,537	3,499	22.5	국토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15.12.14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되어 예산집행시기 절대부족으로 일부 지출하고 시설비(3,499) 집행잔액발생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변경에 대한 의견

가.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의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의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

- 2015년 결산결과 예산의 변경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총 1건, 7억 8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변경사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변경액	사 유	근 거
		변경전	변경후			
합 계		총 1건		780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기획예산과	신립선 경전철 건설(민자)	신립선 경전철 건설(민자)	780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운영을 시행사업자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함에 따른 감리비 부족예산 확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 변경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4)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예비비지출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총 1건, 8억 9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2015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사 업 명	지출액
	1건	89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891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사업은 감사원 처분요구²³⁾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대해 집행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환급하기 위해 8억 9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차량기지 잔여부지에 행정대집행(잔토제거)를 실시하고 '10.3월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며, '10.6월 서울메트로9호선(주)에게 행정대집행 등 비용납부를 요청하여 납부 받은 바 있음

이후 '10.9월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12.4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6월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지급해야 할 건설보조금(17억 75백만원) 중 잔토반출비용(8억 91백만원)을 제외한 잔여금(8억 84백만원)만을 지급했다가 '14.9~10월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²⁴⁾에 지적되어 잔여 건설보조금 8억 9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임
서울시는 '12.4월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1심²⁵⁾, 2심²⁶⁾, 3심²⁷⁾)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건설보조금을 지급

2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도시철도토목부), 감사담당관-4230(2015.3.18.)

24) 서울 지하철 건설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원(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2014.9.29.~10.31

25) 2010구합35630 대집행비용납부명령등취소, 서울행정법원제14부, 2011.2.11.

- 피고(서울시)가 2010.6.24. 원고(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대집행비용 891,000,000원의 납부명령 및 변상금 345,886,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6) 2011누9937 대집행비용납부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제9행정부, 2011.11.3.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4.9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결국 3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예비비를 사용하여 잔여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임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행위는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라고 할 것이며, 예비비²⁸⁾를 사용해야 할 만큼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5)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채무부담행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총 3건, 700억원이 발생하였음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상환조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3건		70,000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시설비	21,000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	예산부족으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
			74,000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	자금부족
		지방자치단체 융자금(공채)	7,500	2016년 예산으로 상환	2015년 예산부족

27) 2011두31352 대집행비용납부명령등취소, 대법원제1부, 2012.4.13.
- 상고를 기각한다.

2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잠실동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까지 총 연장 9.18km, 정거장 8개소(환승역 2개소)를 건설하여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과 송파지역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채무부담행위²⁹⁾ 700억원을 편성함

〈2015년 9호선 3단계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공 구	채무부담승인액	채무부담발행액	비 고
계	70,000	70,000	
919공구	35,000	35,000	동공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15.12월 발행
920공구	7,000	7,500	
921공구	19,000	19,000	
923공구	3,500	3,500	
시스템공사	5,000	5,000	

29)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당초 '15.3월에 완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투입이 저조하여 '16.3월 현재 공정률이 63%에 불과하며 '16년 말 77%, '17년 말 95%를 목표로 공사 중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그동안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비해 50%도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부족을 야기했고, 시비 미확보로 국비예산 마저도 100%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당초 2015년에 완공했어야 할 공사를 2018년까지 연장하게 된 것은 물론,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 것임

서울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비예산은 물론 국비예산확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고, 예산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무부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하철9호선 3단계 연도별 예산요구 및 배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장 래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0후	
요 구	계	1,309,532	30,000	50,000	167,000	306,780	368,100	462,900	348,900	248,862	
	국 비	523,813		32,000	93,100	184,080	172,800	179,300	86,300	109,700	
	시 비	785,719	30,000	18,000	73,900	122,700	195,300	283,600	262,600	139,162	
배 정	계	1,309,532	30,000	43,826	78,338	78,941	117,339	163,939	219,678	214,298	363,173
	국 비	523,813		19,330	16,000	33,950	90,197	98,800	84,900	90,000	90,636
	시 비	785,719	30,000	24,496	62,338	44,991	27,142	65,139	134,778	124,298	272,537
예 산 지 원 율	계		100.0%	87.7%	<u>46.9%</u>	<u>25.7%</u>	<u>31.9%</u>	<u>35.4%</u>	63.0%	86.1%	
	국 비			60.4%	<u>17.2%</u>	<u>18.4%</u>	<u>52.2%</u>	<u>55.1%</u>	98.4%	82.0%	
	시 비		100.0%	136.1%	84.4%	<u>36.7%</u>	<u>13.9%</u>	<u>23.0%</u>	51.3%	89.3%	
요 구 대 비 부 족 액	계		0	<u>-6,174</u>	<u>-88,662</u>	<u>-227,839</u>	<u>-250,761</u>	<u>-298,961</u>	<u>-129,222</u>	<u>-34,564</u>	
	국 비		0	<u>-12,670</u>	<u>-77,100</u>	<u>-150,130</u>	<u>-82,603</u>	<u>-80,500</u>	<u>-1,400</u>	<u>-19,700</u>	
	시 비		0	6,496	<u>-11,562</u>	<u>-77,709</u>	<u>-168,158</u>	<u>-218,461</u>	<u>-127,822</u>	<u>-14,864</u>	